#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9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이건태・민병덕・양문석

김재원 • 정성호 • 이기헌

김성화 • 박희승 • 김현정

서영석 · 김기표 · 황정아

권칠승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 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감사원의 감사도 국가 권력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사·정보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가 감사의 대상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음.

이에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위한 것임(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24조제4항, 제27조제2항등).

법률 제 호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감사의 사전통지) ① 감사원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감사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감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 사전통지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3(감사권한의 남용금지 등) ①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감사과정에서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

-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직전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국회의 감사요구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따른 국민의 감사청구
- 3. 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증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
- 4. 직전의 회계검사나 직무감찰의 범위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제2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제25조제1항 중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을 "감사를"로 한다.
-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0조의2(감사의 사전통지) ①
	감사원은 회계검사 및 직무감
	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감사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u>다.</u>
	② 감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
	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를 시작
	한 이후 국회에 사전통지를 하
	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
	로 보고하고,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
	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 제20조의3(감사권한의 남용금지 등) ①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 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감사과정에서 감사대상 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개 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 른 민감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직전 감사 종료 후 1 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 그 사 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 른 국회의 감사요구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72조에 따른 국민의

     감사청구
  - 3. 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증거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수 없다.

1.·2. (생 략) <신 설>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① 감사원의 <u>회계검사 및 직무감찰</u> (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증거서류·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

4. 직전의 회계검사나 직무감찰
의 범위와 중복되지 아니할
<u>것</u>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③ (현
행과 같음)
<b>4</b>
1. · 2. (현행과 같음)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
책 목적의 당부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①
<u>감사를</u>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

드 사다하 사으가 이으 거

인 등) ① (생 략) <u><신 설></u>

## ② (생략)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 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 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 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⑤ (생략)

제51조(벌칙) ①・② (생 략)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
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u>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4</u>
제3항
·.
⑤ 제3항제4항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세5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 등) ① (현행과 같음)